

外國人관련 株式稅制에 대한 研究

- 非居住者와 外國法人의 株式投資를 중심으로 -

金 光 潤*

〈요 약〉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 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I. 序 論

1. 問題의 提起와 研究目的

(1) 문제의 제기

상법상 주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는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주식이고, 둘째는 사원의 지위인 사원권으로서의 주식이고 후자는 다시 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自益權과 의결권·지배권 등의 共益權으로 나누어진다.¹⁾

주식회사의 주주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에 따르되 주권의 교부로써만 가능하다. 상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의 양도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식의 양도이기 때문이다.

* 亞洲大學校 經營大學 教授, 經營學博士

1)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박영사, 1992, pp.508-509

(표 1-1) 연도별 세목별 조세징수 실적

(단위 : 10억원, %)

구 分	1987		1989		1991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국 세 총 계	12,015	100.0	18,078	100.0	26,985	100.0
1. 내국세	10,011	83.3	15,208	84.1	24,089	89.2
- 직접세	3,924	32.7	6,897	38.1	11,627	43.1
1) 소득세	2,158	17.9	3,556	19.7	6,459	23.9
신고분	717	5.9	1,299	7.2	2,618	9.7
원천분	1,441	12.0	2,256	12.5	3,841	14.2
2) 법인세	1,682	14.0	3,107	17.2	4,585	17.0
3) 상속세	32	0.3	39	0.2	104	0.4
4) 증여세	36	0.3	103	0.6	221	0.8
- 간접세	5,735	47.7	8,063	44.6	12,085	44.8
1) 증권거래세	78	0.6	415	2.3	129	0.5
- 인지세 기타	351	2.9	248	1.4	377	1.4
2 방위·교육세	2,004	16.7	2,870	15.9	2,896	10.7

資料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992. 11, p.36에서 관련세목만 발췌하였다.

따라서 주식은 수시로 양도·양수를 거쳐 이동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자의 재산을 구성하며 배당소득을 발생시키고 처분시에는 주식양도차손익을 발생시킨다. 나아가 주주의 사망으로 인해 주식이 상속되거나 생전에 증여되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 수년간 증자·감자·합병 등 자본거래에 있어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에서 가족 주주간의 신주인수권의 포기, 불균등한 감자 그리고 평가액이 다른 회사간의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실질적 사전 상속 내지 증여가 행해짐으로써 세무 당국의 촉각을 자극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상속·증여세의 강화가 문제의 초점으로 부각되었다.

상장·비상장을 포함한 전체 주식의 재산상 및 거래상 비중에 관한 자료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은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간접적 자료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표 1-1〉 참조).

즉, 주식의 배당소득과 관련있는 소득세(특히 원천분)가 연도별로 증가일로에 있고, 주식의 처분과 관련되는 법인세 역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의제와 관

〈표 1-2〉 연도별 상장주식 총괄표

구 分	회사수(개)	종목수(개)	주식수(백만주)	자본금(억원)	시가총액(억원)
1986	355	485	9,520	56,497	119,942
1988	502	970	2,511	125,604	645,437
1990	669	1,115	4,796	239,818	790,197
1992	693	856	5,445	370,647	847,120

資料 : 재무부, 재정금융통계, 1993. 7, p.89에서 발췌함.

련있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금액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1991년에는 증권시장 침체와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감소되었다.

다른 한편 상장주식을 통한 자본시장의 규모를 보면 아래와 같다(〈표 1-2〉 참조).

즉, 상장회사수 뿐만 아니라 상장자본금과 시가총액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규모를 국제비교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위 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규모가 세계적으로 유수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1988년 12월에 [자본시장 국제화 중기계획('89 - '92)]을 수립·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자본시장의 대외개방을 국내외 경제여건에 맞추어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필연성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추진일정을 밝혔다.

〈표 1-3〉 주요국의 자본시장²⁾

(1988년 기준)

구 分	단 위	한 국	대 만	일 본	미 국
시가총액	억불	943	1,200	38,169	27,938
세계순위	위	15	12	1	2
상장법인수	개	502	163	1,571	6,680
세계순위	위	11	30	4	1
주식투자인구	만명	255	74	2,095	4,703
총인구대비	%	6.1	3.5	17.2	20.0

資料 : 재무부, 재산세제 통계자료집, 1989.10

2) 崔明根, 자본시장활성화와 조세정책, 「한국조세의 과제」, 우현, 1992, p.75에서 재인용함.

'89-'90 : 외국인 펀드(fund) 및 해외증권 발행 등 간접개방

'91 :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지점 설치 및 합작증권회사 신설허용(증권산업 개방)

'92 : 외국인의 국내증권시장에서의 직접 주식매매 허용(주식시장 개방)

그리고 '91년 9월 주식시장개방의 방안으로 (1) '92년 1월부터 모든 상장주식을 외국인의 투자대상으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2) 외국인 전체 투자한도를 상장기업 발행주식총수의 10%로 하고 외국인 1인당 투자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3%로 하며, (3)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자유화하고, (4) 외국인에게 투자등록증(ID card)을 교부하고 장내거래를 원칙으로 전산관리토록 한다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 '93년 6월 재무부장관은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재정금융정책 방향]의 능률협회 조찬강연에서 금융국제화의 일환으로 자본거래자유화를 들면서 (1) 외국인투자 개방업종의 확대 및 투자절차 간소화와 (2)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천명하였다.

또 1993.8.12 20:00부로 정부는 대통령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실명제를 전격 도입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종합과세가 1996년부터 시행되며 상장주식양도차익과세는 증권시장에서의 충격방지차원에서 1998년 이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각각 발표하여 바야흐로 주식관련세제의 연구필요성이 증대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문제의 제기에서 부각된 외국인 즉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주식관련세제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 연구과제(research questions)로서는

첫째, 현행세법 및 조세조약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정의와 과세방법을 고찰하고

둘째, 외국인의 주식보유로 인한 배당소득과세를 연구하고

세째, 외국인의 주식처분으로 인한 주식양도차익과세 문제를 주로 연구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외국인의 투자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세제를 고찰함으로써 현행 세제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자본시장개방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도적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시도한다.

2. 研究의範圍와方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주식관련세제 중에서 외국인(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조세문제를 다룬다.³⁾

3) 본 연구는 필자의 주식세제연구(1993.1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중 일부로서 수정된 것이다.

따라서 주식의 발행자 입장에서 보는 법인세 일반의 심층적 연구와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투자문제는 제외시켰다.

한편 본 연구는 주식에 관련된 세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상법상의 주식 내지 주식소유자로서 주주의 권리·의무 문제는 상세히 다루지 않고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언급하였으며, 증권세제 일반에 포함되는 채권의 세무문제(이자소득세 포함)는 제외하고 오로지 주식의 이동관련세제를 중심으로 현행 세제를 고찰하며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literature research)와 실증연구(empirical research)의 병용이다.

첫째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관련 주식세제를 이해하기 위하여 현행 세법은 물론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과 모델조약으로서 OECD모델과 UN모델을 검토하였다.

둘째로 사회과학에서 실효성있는 연구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실증조사(field survey)를 사전에 인쇄된 설문지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조사하였다.

요컨대 관련세제 현황은 문헌연구에 의하여 파악하였으며,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실증 연구에 주로 의존하되 간혹 관련분야의 선행연구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용하여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Ⅱ. 우리나라 非居住者/外國法人的 株式關聯稅制

1. 非居住者/外國法人的 定義와 課稅 方法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가. 실정세법상 거주자개념의 중요성

증권시장의 국제화로 인한 외국자본의 도입에 따른 국내자본시장의 혼란을 막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는 외국인의 국내주식취득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투자자금의 유출입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국적기준, 국적 및 거주성기준, 거주성기준 등이 있을 수 있다.

- 국적기준에 따르면, 외국국적을 가진 자 만이 외국인으로 정의되므로 해외한국교포는 모두 내국인으로 취급되어 국내 증권시장투자로 인해 대외송금이 제한되게 된다.

- 국적 및 거주성기준에 의하면 국적기준과 거주성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내국인으로 간주되므로 외국국적을 지닌 외국인은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으로 취급 되며 영주권자인 해외교포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므로 외국으로 간주되어 여타 외국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국내주식투자가 가능하다.

- 거주성기준에 따르면 비거주자만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므로 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국내에 거주하여 거주성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내국인으로 간주되어 외국인으로서의 투자제한을 받지 않게 되므로 외국인 투자관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문제가 발생된다.

현행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7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인의 범위는 외국국적개인, 외국법인, 외국인이 과반수 출자 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국내법인 및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에 증권관리위원회가 외국인 주식거래에 관한 규정에서 추가로 정한 외국인은 국민인 해외영주권자,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기구 및 이와 유사한 국제기구 및 단체로 하였다.

또한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외국법인의 자회사 또는 현지법인은 각각 별도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법인의 본점과 국외지점을 합하여 하나의 외국인으로 보되 국내지점은 별도의 외국인 1인으로 본다. 단, 국내지점이 다수인 경우에는 합쳐서 하나의 외국인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자도입법에서는 국적과 거주성을 함께 적용시키고 있으며 외국환 관리법에서는 거주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세법에서도 거주성기준에 따라 개인인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의 여부에 따라, 법인인 경우 내국법인, 외국법인에 따라 과세여부, 과세소득과 과세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소득(양도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외국인의 범위(국적 및 거주성기준)와는 별도로 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정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정의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증권거래법과 외국인 주식거래에 관한 규정상으로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거주성의 차이때문에 달리 과세될 소지가 있으므로 거주성의 개념은 과세목적상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상의 거주자·비거주자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나. 비거주자의 개념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정의된다. 즉,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 구별되어지는 것이지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여부와는 관계없이 정의된다. 이를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거주자)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의 기간 중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

- 외국에서 계속하여 근무함으로써 국내에 주소가 없게 되는 때에도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거주자로 본다.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이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해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비거주자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주한외교관이나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및 한미행정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 국내의 구성원, 공무원 및 그들의 가족(합중국의 소득

〈표 2-1〉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국내원천소득(所法 제134조)	국내사업장·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국내사업장·부동산소득이 없는 비거주자
1. 이자소득(제1호) 2. 배당소득(제2호) 3. 부동산소득(제3호) 4. 선박 등 임대소득(제4호) 5. 사업소득(제5호) 6. 인적용역소득(제6호) 7. 근로소득(제7호) 8. 사용료소득(제11호) 9. 유가증권양도소득(제12호) 10. 기타소득(제13호) 11. 퇴직소득(제8호) 12.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제9호) 13. 산림소득(제10호)	신고납부 (종합과세)	원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예외)은 국내에 주소의 유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 거소의 개념

거소라 함은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 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별률적으로 거소가 가지는 의의는

-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民法 제19조)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民法 제20조) 거소가 주소로 간주되고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효과가 거소에 관하여 일어난다는 데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위의 거주기간에 대한 규정을 개념상으로는 그대로 원용하였으나, 다만 거소내에서의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어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취급하고 있다.

- 거주기간의 계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거주자가 된다.

-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 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그 출국한 목적이 명백하게 일

〈표 2-2〉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구 分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경우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1. 이자소득(제1호) 2. 배당소득(제2호) 3. 선박 등 임대소득(제4호) 4. 사업소득(제5호) 5. 인적용역소득(제6호) 6. 사용료소득(제9호) 7. 유가증권양도소득(제10호) 8. 기타소득(제11호) 9. 부동산소득(제3호) 10. 양도소득(제7호) 11. 산림소득(제8호)	신고납부 (종합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분리과세)
		신고납부 (분류과세)	신고납부 (분류과세)

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한도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두 과세연도에 걸쳐 1년 이상인 때에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2)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에서 그 종류가 열거되어 있으며,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지는 바, 이를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3)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법인세법은 법인을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지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외국법인을 외국에 지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점소재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때 본점이라 함은 영리법인의 영업상 본거지를 말하며 주사무소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를 의미한다.

또한 상법 제172조와 민법 제33조에 의하면 법인은 모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법이나 민법 등 국내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외국법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設立準據法主義).

(4) 외국법인의 과세방법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와 국내사업장 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2. 非居住者 / 外國法人的 株式保有 關聯 稅制

이것은 배당소득의 과세문제로 귀착된다.

(1) 배당소득의 범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소득 중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18조의 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은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所法 제134조 제2호 및 法法 제55조 ① 제2호). 이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을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한 결론이다.

(2) 배당소득의 과세취급

가. 종합과세 신고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대상

-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내국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으로 종합과세된다(法法 제53조 ①).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한다(所法 제136조 ②).

- 신고납부방법

-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그러나 기관투자가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상장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한다.

-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와 같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당소득이 국내 상장회사(투자금액 1억원 이상, 발행총액의 1% 이상)와 기타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22/100(1993.12 개정전은 17/99, 공공법인은 1/12이었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귀속법인세액으로 배당소득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그 다음에 동액의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나. 분리과세 원천징수하는 경우

- 원천징수대상

-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있다고 할지라도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

-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의 배당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 원천징수방법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내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25%)을 적용할 것인가,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이 적용되는가, 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輕減稅率)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일이다. 이에 관하여는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다른 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 非居住者 / 外國法人的 株式處分 關聯 稅制

(1) 개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발행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所法 제23조 ①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서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所法 제134조 제12호, 法法 제55조 ① 제10호).

〈표 2-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양 도 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양수자	양도 목적물	양도일 직전 5년의 기간 중 지분비율	증권 회사를 통한 거래 여부	국내원천소득	
					해 당	해당안됨
1.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양수자는 누구이든 관계없음	· 주식 · 출자증권 · 기타의 유가증권	관계없음	관계 없음	○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국 내사업장	· 주식 · 출자증권 · 기타의 유가증권	관계없음	관계 없음	○	
3.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법인 또는 비 거주자 (그 국내 사업장을 제외함)	· 주식 · 출자증권	10 % 미만 소유	증권회사 통하지 아니 함		○
				증권회사 통함	○	
		기타의 유가증권	10%이상 소유	관계 없음	○	
			관계없음	관계 없음		○

(2)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所令 제185조 ⑧, 法令 제122조 ⑥).

- 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 출자증권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②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 거주자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당해 주식 · 유가증권 기타의 유가증권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그 국내사업장을 제외한다)에게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특히 위③은 자본시장개방에 대비하여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상장주식 포함)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즉, 1990.12.31자로 개정되기 전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주식양도차익이 모두 과세되었으나, 1991.1.1 이후 최초로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것부터는 국내사업장을 제외한 비거주자간 또는 외국법인간에 주식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양도자가 직전 5년 중 총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과세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주식이 해외에서 보다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되었다.⁴⁾

요컨대 국내원천소득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표 2-3>과 같다.

3.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가. 대상 : 특정주식 등의 양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양도하는 유가증권이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특정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고,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所法 제23조 ① 제5호, 所令제115조①제3호, 法法 제55조 ① 제7호).

- ①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 ②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 ④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

4) 재무부, [‘90 간추린 개정세법], 1991, p.376.

- ②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나. 과세방법 : 자진신고납부

상기의 특정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므로,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자가 스스로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다.

III. 租稅條約上 및 主要國의 非居住者 등 株式關聯稅制⁵⁾

1. 租稅條約上 關聯規定

(1)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개념

가. 조세조약상 거주자개념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각국은 자국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의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며(거주지국 과세원칙),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자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행사하는(원천지국과세원칙)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일국의 거주자인 개인이나 법인이 타방국에 진출할 경우에 그의 거주지국에서는 타방국원천소득을 포함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려고 하며, 그의 거주지국에서는 타방국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려고 하여 이중과세(국제적 이중과세,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각국은 상호간에 조세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조세조약의 주요대상인 이중과세는 위와 같은 원천지국과 거주지국간의 경합에서 발생하는 경우외에도 양체약국의 국내법상 거주자(개인과 법인포함)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름으로 인하여 동일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함으로써 이중과세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세조약은 국적에 관계없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

5) 외국사례는 아래 문헌들을 참조하였음.

金龍均·林重根, 증시국제화와 증권세제의 방향연구, 상장협 연구보고서 91-4, 1992.12, pp.37-38.

DTR International, Tax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Tax and Business Guide, 1991.

宮島 洋, 各國の 證券稅制研究, 日本證券經濟研究所, 1993.

되는 것이며 양국간 조약이기 때문에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거주지국간의 과세권경합으로 인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세조약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거주자의 개념이 매우 중요해지므로 조세조약은 예외없이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양체약국간 거주자개념에 상위가 생길 경우에는 거주지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조세조약의 규정은 국내세법에 비하여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히 국내세법에 위임해 놓고 있는 이외에는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나. 조세조약상 개념의 특성

조세조약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상의 개인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납세자가 어떤 국가에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관리장소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따라 당해 국가의 세법하에 납세의무를 지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조약에서는 "당해 국가의 세법하에 납세의무를 지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거주자의 개념을 일차적으로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일부 국가들과 체결한 조약에서는 위의 거주자개념에 추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는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방체약국에 사실상 거주하고는 있으나 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만 당해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그 국가의 거주자로부터 제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외교관 등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거주자의 범위에 관한 국내세법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조세조약상 내용은 없다. 이에 추가하여 조세조약에서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되는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기준을 예외없이 규정하고 있다.

다.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기준

어느 외국인이 국내세법(소득세법, 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목적상 한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개념이 다름으로 인하여 자국내 세법에 의하여 자국의 거주자에도 동시에 해당한다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그의 거주지국을 판정한 후에 한국내에서의 과세여부, 과세소득과 과세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이중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지국 판정지국

개인이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 영구적 주거(permanent home) : 그의 가족의 거주 장소, 즉 가정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일시적인 아니고 항구적인 사용을 위한 곳을 의미한다.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 :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그의 가족관계, 사회경제적 관계, 직업, 사업장소,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만일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그 양체약국에 모두 항구적 거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경제적 관계(personal economic relations)가 더 밀접한 국가, 즉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인정되는 국가의 거주자가 된다.
-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 개인이 양 체약국 어느 곳에도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지 않고 호텔 등에서만 체재하는 경우 또는 항구적 주거를 양 체약국에 두고 있으며,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더 자주 또는 오래 체류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다.
- 국민(national)과 상호협의(mutual agreement) : 만약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가 양국의 국민이거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한다.

- 이중거주자인 법인의 거주지국 판정기준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내·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준거법주의와 실질관리주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법 제1조에서 본점소재지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상법이나 민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하므로 준거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대 체약국이 실질관리지주의를 채택하여 법인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관리 및 지배되는 장소인 이사회가 있는 국가, 즉 법인의 최고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그 법인의 거주지국으로 보게되면 이중거주자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은 그 법인의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실질관리장소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2)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의 적용

가. 논점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은 본질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소득원천지국

과 거주지국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자본투자는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또한 동자본투자를 받아들이는 입장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원천지국의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수입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조세조약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어느 한 국가에만 과세권을 인정하게 되면, 상대방 국가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양국가에 배분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천지국은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상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도록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거주지국에 있어서는 원천지국에서 이미 과세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액공제방식(Credit Method)이나 소득면제방법(Exemption Method)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지국의 과세권도 일부 축소시키고 있다.

나. 제한세율의 의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또는 경감세율)이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최고한도의 세율을 의미한다. 즉,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갖는 의미는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창설적으로 부여한 것이라기보다는 원천지국이 국내법상의 세율로 과세를 하되, 당해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세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원천지국의 국내법상 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은 별다른 존재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한편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세조약상의 모든 대상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하면 26.75%(법인세 25%, 주민세 7.5%)의 세율로 과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일조세조약 제1조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민세는 대상조세에 포함되며, 또한 동 조약 제9조 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은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한일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2%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조약상 대상조세인 주민세의 세율까지를 고려한 세율이 12%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배분 및 그에 따른 세목별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①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text{조세조약상 제한세율} \times \text{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세율} \div [\text{법인세(소득세)}$$

(표 3-1) 세율의 한도

번호	체 약 국	제한세율(%)	
		법인간 배당(持株率)	기타배당
1	일	본	12
2	태	국	15(25% 이상 20%)
3	미	국	10(10% 이상 소유)
4	데	마	
5	카	나	
6	벨	지	15
7	노	르	
8	호	웨	
9	뉴	질	
10	영	랜	10(10% 이상 소유)
11	독		
12	불	란	
13	신	가	
14	네	델	
15	스	위	10(25% 이상 소유)
16	핀	랜	
17	스	웨	
18	말	레이	
19	스	이	
20	록	지	
21	인	아	
22	방	리	15(20% 이상 소유)
23	글	랑	10(10% 이상 소유)
24	라	부	10(10% 이상 소유)
25	데	루	15(25% 이상 소유)
26	시	트	10(20% 이상 소유)
27	필	리	10(10% 이상 소유)
28	터	아	10(25% 이상 소유)
29	파	인	15(최혜국대우 규정)
30	키	도	10(25% 이상 소유)
31	오	네	10(25% 이상 소유)
32	스	시	15
33	트	아	15
34	형	라	15
	소	태	15
	아	니	15
	몽	시	10
		가	10
		리	10
		련	15
		드	15
		골	5

資料: 재무부 국제조세파, 1994. 1.

註: 1. 지주율, 즉 법인간 배당이 되기 위한 자본소유비율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의 소유비율을 의미한다.

2. 지주율은 법상 배당수취자격이 부여되는 시점에 동 지주율만큼 소유하고 있으면 동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보아 법인간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

3. 여기에서 자본은 주식의 종류(보통주, 우선주, 의결권 주식 등)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정하고 있는 조약도 있다(예: 태국).

원천징수세율 + 주민세 원천징수세율)

$$= 12\% \times \frac{25\%}{25\% + (25\% \times 7.5\%)}$$

$$= 11.16\%$$

② 주민세 원천징수세율

$$= \text{조세조약상 제한세율} \times \text{주민세 원천징수세율} \div [\text{법인세(소득세)} \\ \text{원천징수세율} + \text{주민세 원천징수세율})]$$

$$= 12\% \times \frac{25\% \times 7.5\%}{25\% + (25\% \times 7.5\%)}$$

$$= 0.84\%$$

$$(= \text{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text{법인세 원천징수세율})$$

③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 \text{법인세(소득세)} \text{ 원천징수세율} + \text{주민세 원천징수세율} \\ = 11.16\% + 0.84\% \\ = 12\%$$

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우리나라가 그 동안 체결한 조세조약상 배당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한도는 <표 3-1>과 같다.

(3)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과세취급

가. 논 점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에 따라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제조세분야에서도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OECD모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취급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과세취급의 유형

-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경우

이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그 대상국가는 다음과 같다.

영국, 덴마크, 벨지움, 스웨덴, 이집트, 네델란드, 스위스,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미국 이중 한·미조세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개인인 경우

i) 과세년도 중 183일 이상 고정시설을 유지하며 당해 유가증권이 동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ii) 과세년도 중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

④ 법인(투자회사 또는 지분회사)인 경우

i)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가 일반적으로 법인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보다 실질적으로 적고,

ii) 주식양도법인의 자본의 25% 이상을 동 국가의 개인거주자가 아닌 1인 이상의 법인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는 경우

-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주식의 양도소득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UN모델조약] 제13조 제4항에서는, 일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된 재산으로 하는 법인의 주식자본의 지분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양도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주식의 양도대가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당해 재산이 소재한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반면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하는 경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조세조약 중 이 규정을 채택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뉴질랜드, 불란서, 카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 일정률 이상 소유한 법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주식양도자가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피투자회사의 이윤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한 참가권을 가지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을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모두 과세되는 경우

① 카나다, 이태리

피투자회사의 이윤의 25% 이상에 대한 참가권을 가지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오스트리아

양도 직전 2년 중 어느 때에 일방체약국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소유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당해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소득의 10%를 한도로 일방체약국(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참고로 현행 증권거래법과 외국인 주식투자에 관한 규정상 외국인 1인의 주식 취득 한도는 발행법인 주식총수의 3% 이내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없을 것이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을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국(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 우이다. 그러나 체약당사국의 국내세법에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국내세법상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이면 과세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독일, 일본, 태국, 싱가폴, 호주, 브라질, 터키

단, 한·터키조세조약에서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1년 미만인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2. 주요국가의 세제

(1) 美 國

미국은 국적지국 과세원칙을 택하고 있으므로 미국국적을 가진 시민과 연방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의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과세권을 가진다. 외국인 거주자의 정의는 외국인이 미국의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ce test or greencard test)이거나 미국체류일을 기준(substantial presence test)으로 하여 판정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거주자에게는 분리과세제도가 없고 종합과세제도를 택하고 있다. 비거주자가 미국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여 미국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 납부한다.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율은 30%이고 비거주자국이 미국과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원천징수율은 10~15%로 낮아진다. 비거주자가 미국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는 비과세된다.

(2) 日 本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5% 이상의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한다.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6%(주

민세 6% 포함)의 세율로서 분리과세된다. 만일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의 경우 거주자는 양도차익의 26% 대신 양도가액의 1%를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당해연도의 양도차손은 양도차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소득은 20%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일본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일간의 조세조약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세율을 12%로 정하고 있다.

(3) 英 國

영국은 비거주자나 영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택하고 있다.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의 소득에는 일반적으로 35%의 원천징수율을 택하고 있으나 영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0~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영국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비과세된다.

(4) 프 랑 스

프랑스는 비거주자나 프랑스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세법상으로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5~1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금액(FF 316,900)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이상은 18.1%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IV. 實證調查 : 問題點과 改善方案

1. 實證調查의 概要

(1) 조사의 시기·방법 및 내용

본 연구를 위한 실증조사는 1993. 8. 16부터 1993. 8. 30까지 15일간 실시되었으며 인쇄된 설문지에 의하여 직접 방문 및 우편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대상은 기업체 임직원, 세무전문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그리고 세무공무원(재무부·국세청·세무서)의 세 그룹으로 대별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내 용	문 항 수
외국인 세제관련 주요개념	4
외국인의 주식보유관련세제	1
외국인의 주식처분관련세제	2
계	7

(2) 회수율과 표본의 특성

상술한 세 그룹에 대한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상황은 아래와 같았다.

구 분	배 포 수	응답 수	회수율
기업체 임직원	702 명	123 명	17.5%
세무전문가	350	92	26.3
세무공무원	150	90	60.0
계	1,200 명	305 명	25.4%

회수된 표본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응답자 수	비 고
기업체	업종	증권·금융·보험업	미응답 1
		기타 업종	
세무관련 경력기간	상장 여부	122	미응답 2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직접적 주식투자 경험		102	미응답 6
		19	
	계	121	
	3년 미만	64	미응답 3
		64	
	6~10년 미만	54	
		117	
	10년 이상	299	
	있다 없다	244	
		58	
	계	302	

즉 기업의 경우 대체로 전업종에 걸쳐 상장법인이 중심을 이루었고, 세무관련 업무 내지 연구경력이 중·장기적이었으며 직접적인 주식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응답한 것으로

로 나타나 표본의 대표성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조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실증조사방법으로 채택한 설문조사의 응답이 신뢰할 만한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Alpha Test를 실시한 결과 계수는 0.670으로 나타나 양호하였다.

(4) 통계분석의 기법

설문조사내용을 통계분석함에 있어서 SAS 통계폐키지를 이용하되, 빈도분석과 함께 집단상호간 인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질문의 답지가 이산형(discrete)인 경우 비모수기법인 χ^2 -test를 실시하였고, 연속형(continuous)인 경우 모수기법인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하여 집단간 차이검증을 하였다.

2. 分野別 問題點과 改善方案

(1) 주요 개념에 대한 이해정도

-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에 대한 인지도

(무응답: 7)

구 분	응답자 수	평균(5점 만점)		P > F
기업체 임직원	116	3.672		
세무전문가	92	4.033	7.69	0.0006
세무공무원	90	3.989		
계	298	3.879		

Likert 5점 척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 3.879로서 평균을 넘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세무전문가가 기업체임직원보다 잘 숙지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p=0.0006$).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P.E.) 판정기준에 대한 인지도

(무응답: 8)

구 분	응답자 수	평균(5점 만점)	F 값	P > F
기업체 임직원	116	3.491		
세무전문가	92	3.772	3.25	0.040
세무공무원	89	3.775		
계	297	3.663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Likert 5점 척도에서 평균을 넘어 3.663으로 나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집단별로는 기업체임직원의 인지도가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낮아 차이를 나타냈다.

3)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기준에 대한 인지도

(무응답 : 9)

구 분	응답자 수	평균(5점 만점)	F 값	P > F
기업체 임직원	115	3.026		
세무전문가	92	3.304	5.57	0.004
세무공무원	89	3.517		
계	296	3.260		

전체적으로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3.260으로 평균을 넘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별로는 기업체임직원의 경우 비교적 낮아 차이를 보였다.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한 인지도

(무응답 : 9)

구 분	응답자 수	평균(5점 만점)	F 값	P > F
기업체 임직원	116	3.647		
세무전문가	92	3.967	5.76	0.0035
세무공무원	88	3.943		
계	296	3.834		

Likert 5점 척도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3.834로 평균을 훨씬 넘어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기업체임직원의 경우 다소 낮아 차이가 있었다($p=0.0035$).

(2) 문제점과 개선방안

여기서는 국내세법뿐 아니라 조세조약의 문제도 같이 취급하기로 한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보유관련 세제

· 문제점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응답 : 69)

구 분	응답자수	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높다	③ 제한세율의 적용 대상이 다양	χ^2 (p값)
기업체 임직원 세 무 전 문 가 세 무 공 무 원	102 68 66	31(30.4%) 25(36.8%) 18(27.3%)	44(43.1%) 22(32.4%) 20(30.3%)	7.237 (0.299)
계	236	74(31.4%)	86(36.4%)	

즉, 첫번째 문제점으로는 문항 ③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은 모든 세목(법인소득세 뿐만 아니라 주민세등 부가세도 포함)을 고려해야 하지만 조약 상대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를 들었고(36.4%), 두번째 문제점으로는 문항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완납적 원천징수 세율은 지급금액의 25%이다]를 지적하였다(31.4%). 이에 관한 집단별 인식도 큰 차이가 없었다($p=0.299$)

· 개선방안

①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가급적 통일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세조약의 체결당사국에 따라 조세체계상 차이가 있으므로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증권회사 등의 원천징수 실무상 곤란을 해소하고, 또 배당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소득세와 그 부가세인 주민세 등을 모두 고려하되 각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은 제한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인하가 필요하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법인세로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거주자/내국법인과의 형평 및 대체로 낮은 제한세율의 적용에 따른 실효성 측면을 고려하여 15~20% 정도로 인하함이 필요하다.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처분관련 세제

· 문제점

외국인의 주식양도관련세제의 주요 문제점을 두 가지 지적하라는 설문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응답 : 53)

구 분	응답자수	②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원천징수가 복잡	③ CB, BW 등 금융 상품관련 과세 규정 없음	χ^2 (p값)
기업체 임직원	101	62(61.4%)	20(19.8%)	
세무전문가	82	37(45.1%)	31(37.8%)	
세무공무원	69	41(59.4%)	20(29.0%)	9.337 (0.155)
계	252	140(55.6%)	71(28.2%)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첫째 문제점으로는 문항 ②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계산이 복잡하다」를 들었고(55.6%), 둘째 문제점으로는 문항 ③ 「해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등 금융 상품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다」를 들었다(28.2%). 이것에 대하여는 집단별로도 인식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155$).

특히, 전자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다시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응답자수	① 양도가액의 10%는 높다	② 양도차익의 계산이 복잡함	χ^2 (p값)
기업체 임직원	98	23(23.5%)	50(51.0%)	
세무전문가	78	28(35.9%)	21(26.9%)	
세무공무원	72	18(25.0%)	39(54.2%)	17.544 (0.007)
계	248	69(27.8%)	110(44.4%)	

현행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원천분리과세액을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대한 구체적 문제로서, 첫번째 문제점은 문항 ② 「양도차익의 계산이 신속·간단히 계산되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44.4%) 이는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 - 취득가액」의 요소별 파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둘째 문제점은 문항 ① 「양도가액의 10%상당액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27.8%). 집단별로는 세무전문가의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로 문항 ③ 「양도차익계산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그룹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p=0.007$).

· 개선방안

- ① 국내사업장 없는 경우 주식양도차익과세시 원천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신고분류과세도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추후 원하는 납세자에게 정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이다.
- ② 주식양도차익과세시 원천징수세액을 양도가액의 10% 상당액으로 하고 있으나 좀더 인하가 필요하다. 이는 순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5%와는 달리 주식양도차익과세시 양도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일본의 경우 지급액의 1%(= 5% × 20%) 원천징수 등과 비교할 때 너무 높다. 일반적으로 위험을 고려하여 증권투자수익율은 20%라고 본다면 소득세율 25%를 고려할 때 지급액대비 원천징수세율은 5%(= 20% × 25%)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V. 結 論

1. 研究結果의 要約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외국인 관련 주식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문헌연구 및 실증연구에 의하여 고찰한 것이다. 실증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주제별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보유관련 세제

-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세목을 조세조약별 가급적 통일화시키는 노력이 원천징수실무상 곤란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5%)의 인하가 필요하다.

(2)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처분관련 세제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는 원천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시 원천징수세액을 양도가액의 10% 상당액과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전자인 양도가액의 10%를 5% 정도로 인하함이 현실적이다.

2. 研究의 限界

본 연구는 외국인관련 주식세제를 주식의 이동단계별로 중점 고찰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해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다.

- 연구주제가 세제 중에서도 특수영역의 전문세제인 까닭에 내용의 이해가 선행조건이다. 그 결과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기업체임직원의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났는 바 무응답오류(non-response bias)가 있을 수 있다.
- 향후의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내국인의 외국투자도 상호주의적 차원에서 병행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金光潤, 주식세제의 개선방안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3.10.
- 金光潤, 현대세무회계 - 이론과 실제, 제5개정판, 박영사, 1993.
- 金龍均·林重根, 증시국제화와 증권세제의 방향 연구, 상장협연구보고서91-4, 1992.
- 朴忠煥·李盈雨, 주식거래와 세금, 개정판, 한국세정신문사, 1992.
- 李光宰, 주식이동에 관한 세무, 세경사, 1992.
- 任翊淳·朴正旭, 주요국의 증권세제에 관한 비교, 「증권투자논총」, 박영사, 1991.
- 崔基元, 상법학신론(上), 박영사, 1992.
- 崔明根, 자본시장활성화와 조세정책, 「한국조세의 과제」, 우현, 1992.
- Commerce Clearing House**, U.S. Master Tax Guide, 1993.
- Coopers and Lybrand**, International Tax Summaries, Wiley and Sons, 1993.
- DRT International**, *Tax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Tax and Business Guide*, 1991.
- DRT International**, *Taxation in Europe, International Tax and Business Guide*, 1991.

《일 반 사 항》

1. 귀하의 직업은?

- ① 기업체 임직원
- ② 세무전문가(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교수)
- ③ 세무공무원(재무부·국세청·세무서)

2. (위 1문에서 ① 응답자만) 귀사의 업종은?

- ① 증권·금융·보험업(투신·자문·경제연구소 포함)
- ② 기타 업종

3. (위 1문에서 ① 응답자만) 귀사의 상장여부는?

- ① 상장법인
- ② 비상장법인

4. 귀하의 세무·회계 또는 주식관련 업무(또는 연구)경력은?

- ① 3년 미만
- ② 3~6년 미만
- ③ 6~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5. 귀하의 직접적 주식 투자 경험은?

- ① 있다.
- ② 없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관련세제 설문지》

1.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

잘 모른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2.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선정기준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

잘 모른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3.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기준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

잘 모른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4.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① ② ③ ④ ⑤

+-----+-----+-----+-----+

잘 모른다 모른다 그저 그렇다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5.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관련세제의 문제점은?(택2 하시오)

-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완납적 원천징수세율은 지급금액의 25%이다.
- ②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제한세율의 대상은 모든 세목(법인/소득세 뿐 아니라 주민세 등 부가세도 포함)을 고려해야 하지만, 조약상대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④ 외자도입법상 인가영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만 일정기간 50% 감면하고 인가외 영업소득분은 감면을 배제한다.
- 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종합과세함을 원

칙으로 하되, 다만 퇴직 · 양도 · 산림소득은 신고분리과세한다.

⑥ 기타()

6.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주식양도 관련세제의 문제점은?(택2 하시오)

- ① 열거된 국내 원천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상장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 ②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계산이 복잡하다.
- ③ 해외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외국인전용수익증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다.
- ④ treaty shopping(제3국 거주자의 조세조약 이용 행위) 방지 등 제반조치를 원천징수기관(증권회사/주식발행법인)에 부담지우고 있다.
- 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종합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퇴직 · 양도 · 산림소득은 신고분리과세한다.

⑥ 기타()

7. 현행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원천분리과세액은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이것의 문제점은? (택2 하시오)

- ① 양도가액의 10% 상당액이 너무 높다.
- ② 양도차익의 계산이 신속 · 간단히 계산되기 어렵다.
- ③ 양도차익계산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所
수 제189조 ① 제1호).
- ④ 양도차손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다.

⑤ 기타()